

199 년도 지방토론회(경남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 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마산에서 그 지역 언론계 · 학계 · 법조계 · 사회단체 등 각계인사를 초청 지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 월 11 일 마산 롯데 크리스탈호텔에서 열린 경남지방토론회에서는 정진석 위원(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의 변천과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논문과 토론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의 변천과 앞으로의 방향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신방과 교수

언론에 의한 권익침해와 명예훼손의 구제문제는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민간신문이 발간되던 초기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몇 단계 법 · 윤리환경의 변화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언론관계법의 제정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이 창간된 지 2 년 뒤인 1898 년 10 월이었다. 독립신문 이후에 창간된 몇 개 민간지들이 열강의 한국 침탈을 비판하고 그들의 이권 요구를 폭로하는 기사를 자주 게재하자 주한 열강공사들은 언론을 통제하라고 대한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신문지조예를 모방하여 1899 년 1 월에는 36 조로 된 신문조예를 제정하였으나 너무 가혹한 규제조항이 많다는 언론계의 반발로 인해 이를 시행하지도 않은 채 폐기시키고 말았다. 한일합방 후 일제는 언론의 명예훼손에 관해서 신문지법과 아울러 1907 년에 제정된 일본의 형법 제 34 장 「명예에 대한 죄」를 적용했었다. 신문지법은 보도된 기사와 관련된 당사자가정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문이 당연히 이를 실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때 만일 피해자가 원래 보도했던 기사와 같거나 그 이하의 크기로 「정오서」 또는 「반박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그대로 실어주어야 하되, 그 길이가 원래 기사보다 길 경우라도 초과분량에 해당하는 광고료를 지불하면 전문을 그대로 실어주도록 하는 강제조항까지 들어 있었다. 해방 후 명예훼손 문제와 함께 프라이버시라는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 년대 후반부터였다. 60 년대 초반까지는 혼란과 전쟁의 와중에서 명예훼손에 관해서까지 차분하게 생각할 여건이 못되었다. 더구나 일제치하에서 명예훼손 조항이 언론탄압의 구실로 악용되었음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언론의 침해사례에 대해 언론계는 비교적 무관심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언론계도 50 년대 후반부터 이 문제에 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7 년 4 월 7 일 제 1 회 신문의 날을 제정하면서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하였는데 제 7 항에서 「특히 개인의 명예는 존중되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이 아닌 호기심 또는 악의에서 개인의 권리나 감정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4·19 이후에는 언론자유가 제한 없이 허용되고 발행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수 많은 신문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언론의 질적인 저하가 뒤따르게 되었다. 이때 언론계에서도 자율정화를 위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보려는 언론 자체의 노력이 구체화되지 전에 5·16이 일어났다. 사정부는 1961년 5월 2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 11호를 공포하여 신문의 일제정비를 단행하면서 언론통제의 차원에서 언론의 윤리와 책임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해 7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초한 「신문등 등록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언론계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한국신문윤리 위의 구성을 서둘렀다. 윤리위 원회는 창설 후 처음에는 제소사건만을 다루었으나 1964년 공화당 정권이 신문윤리 위원회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자 자체에 심의실을 설치하여 전국의 신문을 매일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언론의 책임과 윤리문제를 법에 따라 다룰 것이 아니라 언론계가 스스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외부의 간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이제는 언론이 자유의 신장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책임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언론에 의한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보상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계가 되었다는 인식이 언론과 법조계, 정부 및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당위성에대한 언론계의 새로운 인식, 인권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 일반 국민의 권리의식 양양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중재제도 10년을 평가해 볼 때에 언론중재위원회 발족 이후 언론침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과 지난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사회가 언론중재제도에 관해서 어느 정도로 잘 알고 있느냐 하는 점이고, 둘째는 언론중재제도의 운용과정에서 표출된 문제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며, 셋째는 중재가 성립된 경우의 정정보도 또는 정식재판에 의한 손해배상이 피해자의 구제에 과연 충분한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단독 입법을 신중히 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 3극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단독 입법으로 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에 제시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피해자가 법정소송에 가지 않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으로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강화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언론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인간의 권익과 명예가 더욱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노력은 언론과 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와 정부당국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들과 민간기구들이 인권보호와 소비자운동의 차원에서 이를 더욱 널리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앙대, 서울대 대학원신문학석사, 런던대 정치학박사

□ 독서신문 편집부장, 기자협회 편집실장, 관훈클럽 사무국장

- 저술: 「일제하한국언론투쟁사」, 「한국언론사연구」,
「한국현대언론사론」 「대한매일신도와 배설」
-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위원